

복수지위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기한 혼동항변의 인정범위와 제한*

이 준 교**

<차례> _____

I. 서 론

IV. 최근 대법원 판례 분석 및 평가

II. 보험자대위 및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

V. 결 론

III. 주요 가정별 보상·대위 관계 분석 및 평가

주제어 : 보험자대위, 피해자 직접청구권, 복수지위보험자, 상계, 혼동

<국문초록> 개별 경제주체들이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전가 내지 관리하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보편화되면서 보험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와 피해자의 재물보험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복수지위보험자의 등장이 예전에 비하여 쉽게 목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수지위보험자가 재물보험자의 지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취득하는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쟁점이 생겨난다. 예를 들면, 복수지위보험자가 보험자대위 법리에 기하여 민법상의 상계 또는 혼동법리를 이유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항변할 수 있는지, 또는 복수지위보험자가 혼동법리를 통하여 책임보험자의 지위로서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 쉽지 않다.

본고에서 보험자대위와 직접청구권이 결부된 쟁점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단순한 가정 하에 보험자대위와 관련한 위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같은 쟁점을 다른 최근 대법원 판결사건(2건) 분석을 통하여 책임보험자가 혼동법리를 통하여 보험자대위를 우선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입법된 상법상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는 점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개입된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효용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복수지위보험자의 대위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 본 논문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기관의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귀중하고 유익한 심사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국장.

- 논문접수일(2023.10.03), 심사개시일(2023.10.19), 게재확정일(2023.11.05)

기존의 ‘피보험자’ 관점에서 보험효용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 관점에서도 책임보험의 효용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법상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복수지위보험자의 대위권은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해서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점을 잘 짚어주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I. 서 론

일반적으로 보험자대위¹⁾와 관련한 쟁점은 보험자(책임보험자 또는 재물보험자), 그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 그리고 사고책임이 있는 가해자(제3자)의 관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재물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대위의 범위(절대설, 상대설, 차액설 관련 논의)에 관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재물보험자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쟁점은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상당 부분 정리되었다. 그러나 점차 보험가입이 보편화되면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 지위와 피해자의 재물보험자 지위를 동시에 갖는 보험자(이하 “복수지위보험자”라 한다)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복수지위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 범위와 연관된 새로운 쟁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는 ① 복수지위보험자가 민법상의 상계 또는 혼동법리를 이유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항변할 수 있는지, ② 복수지위보험자가 대위로 취득한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다른 재물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피해자 직접청구권 경합시 적용방법, ③ 복수지위보험자가 혼동법리를 통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범위 및 다른 재물보험자의 대위권 행사범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쟁점들이 포함된 유사한 두 개의 소송사건이 최근 대법원²⁾에서 다루어졌고, 복수지위보험자의 대위와 피해자 직접청구권 간의 법률관계를 제시하여 유사 분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었다.

1) 보험대위의 종류에는 보험목적물 대위와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가 존재하는데 본고에서는 보험자의 청구권 대위를 의미한다. 이하에서 ‘보험자대위’라는 표현은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를 말한다.
2) 대법원 2023.4.27. 선고2017다239014 판결 및 대법원 2023.4.27. 선고2021다309576 판결. 모두 복수지위보험자의 대위와 관련된 것이지만 쟁점은 다르다. 대법원이 두 판결을 의도적으로 같은 날짜에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자대위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보험자 대위법리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다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 분쟁의 여지가 많다. 특히, 다수의 보험자에 의한 보험자대위와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까지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연관 보험자들 및 피해자 간의 보상 및 대위 관련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이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제Ⅱ장에서 보험자대위 내지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취지 및 법적성격을 간략히 설명하고, 제Ⅲ장에서는 보험자대위와 직접청구권이 결부된 쟁점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가정 하에 복수지위보험자의 대위권에 기초한 상계 또는 혼동항변의 타당성 및 그 적용범위와 제한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제Ⅳ장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두 가지 소송사건을 분석하고 그 판결의 의미를 평가한다.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보험자대위와 피해자 직접청구권 간의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면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Ⅱ. 보험자대위 및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

1. 보험자 대위 (청구권 대위) : 상법 제682조

1) 법적 취지와 성격

특정사고로 인하여 소유 재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는 당해 계약에 기하여 보험자로부터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실제손해를 보상받는다. 만약, 사고를 야기한 제3자가 존재한다면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전액 보상받은 후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를 다시 보전받을 수 있다면 피보험자는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자의 손해보전에 만족하고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응당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부담을 면하는 부당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상법상의 보험자 대위제도(Subrogation³⁾)이다.⁴⁾

3) Ronald H. Horn, "Subrogation in Insurance Theory and Practice", S.S. Huebner Foundation, 1964년 p.12:

즉, 일단 보험자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한 후, 보험자대위를 통하여 사고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피보험자는 더 이상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동시에 권리를 이전 받은 보험자가 제3자에게 그 권리를 그대로 대위행사하여 제3자의 책임도 면탈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권리양도를 위한 의사표시 내지 관련 절차의 이행을 통하여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이 요구하는 보험자대위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보험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법률상 권리이다.⁵⁾ 그러므로 손해를 야기한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도 요구되지 않는다.⁶⁾ 또한 보험자의 권리취득은 승계취득이다. 즉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를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다.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권리에 제한이나 하자가 있으면 이는 보험자의 권리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보험자대위의 행사의 대상인 제3자는 그러한 제한이나 하자를 가지고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⁷⁾

2)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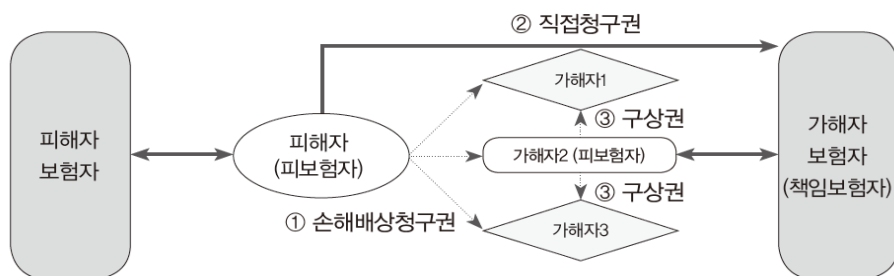
상법 제682조 본문 문언만으로는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권리는 가해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읽혀질 수도 있지만, 판례와 통설은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의 구상권, 책임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 그 대상을 넓게 해석하고 있다.

“보험자대위를 나타내는 Subrogation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대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subrogare’에서 나온 것이다.”

- 4) 이준교, “보험자대위의 법률관계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2022, 11면.
- 5) 장덕조, 『보험법(제5판)』, 법문사, 2020, 262면; 한기정, 『보험법(제3판)』 박영사, 2021, 540면.
- 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 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7) 장덕조, 앞의 책, 279면; 한기정, 앞의 책, 547면.

기본적으로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청구권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①~③)를 이해할 수 있다. 좌측에 있는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가 피해자(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보험자는 그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①)을 대위하여 가해자(1~3)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가해자 중 1인이 우측에 있는 보험자에게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좌측의 보험자는 피해자 직접청구권(②)을 우측의 보험자에게 대위행사할 수도 있다. 한편, 좌측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우측의 책임보험자가 가해자2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가해자2가 배상함으로써 그 책임을 함께 면한 가해자들(1과 3)에게 가해자2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③)을 우측의 책임보험자가 대위하여 가해자1과 3에게 행사할 수 있다.⁸⁾ 좌측의 보험자는 피보험자 소유의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자로 가정하면 되고, 우측의 보험자는 화재사고에 책임이 있는 제3자, 즉 가해자 측의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자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⁹⁾

<그림>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권리



3) 피보험자의 손해회복이 안되었을 경우 보험자 대위 범위의 제한

전부보험(Full Insurance)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를 보상하므로 보험자대위에 기한 청구권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지 않

8) 장덕조·남하균,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과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 금융법연구 제15권 제1호, 2018, 124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구상권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그 법적성질이 전혀 다르다. 구상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일종으로 파악됨에 반하여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9) 이준교, 앞의 논문, 43~44면.

아 보험자대위 행사범위에 관한 쟁점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부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손해액 전체에 대한 손해전보를 받지 못하여 잔여 손해액에 대하여 책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보험자의 대위권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가해자의 책임금액을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상법상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보험자의 대위권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지에 관하여 다수의 학설(절대설, 상대설, 차액설)이 존재한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¹⁰⁾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가장 우선시하여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피보험자의 진존손해액을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할 수 있다는 차액설(피보험자 우선설)에 입각하고 있으며, 학계의 통설적 견해¹¹⁾도 동일하다.

대법원이 보험자대위 범위에 제한을 가하는 ‘차액설’을 취한 이유는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준비한 보험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손해회복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자대위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82조 단서조항,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2. 피해자 직접청구권 : 상법 제724조 제2항

1) 법적 취지와 성격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에게 피보험자가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동조 제1항에서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10) 과거부터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일관된 견해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다46211 판결) 이전에는 보험자의 권리를 가장 우선시하는 ‘절대설’에 기초한 판결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동 전원합의체 판결 후로는 일관되게 ‘차액설’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

11) 박세민, 『보험법(제6판)』, 박영사, 2021년, 553면;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지원, 2005년, 257면; 장덕조, 앞의 책, 227면; 한창희, 『보험법(제4판)』,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9년, 389면.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피해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확실한 구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피보험자만이 가지게 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반적인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이러한 지위만 인정한다면, 책임재산이 별로 없어 자력으로는 손해를 배상할 수 없는 상태의 피보험자의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방안으로 가해자의 보험금 유용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¹²⁾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상법에 명문화시킨 것이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보험금청구권설과 손해배상청구권설이라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지만, 대법원 판례와 통설적 견해¹³⁾는 손해배상청구권설이다. 보험금청구권설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 때문에 제3자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권설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 이해한다. 과거 초기의 대법원 판례¹⁴⁾는 보험금청구권설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2000년도 이후의 대법원 판결들은¹⁵⁾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과의 관계

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행사할

12) 장덕조, 앞의 책, 358면.

13)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년, 373~383면; 박세민, 앞의 책, 535면; 장덕조, 앞의 책, 274~275면; 한기정, 앞의 책, 574면; 한창희, 앞의 책, 386면.

14)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등.

15)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77312판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등.

수 있는 직접청구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피보험자가 자신의 책임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이 병존한다.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가해자(피보험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두 개의 청구권은 발생근거가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피해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의 손해배상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와 피보험자 각자도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두 개의 청구권이 별개의 독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전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를 행사하여 피해자가 만족이 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양 청구권은 소멸한다.

다음으로 책임보험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로부터는 직접청구권 행사를, 피보험자로부터는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두 개 청구권의 경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법 제724조 제1항에서 피해자인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보험자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먼저 응하여야 한다. 즉, 책임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험계약상의 보상한도액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회복시켜야 함을 의미한다.¹⁶⁾

III. 주요 가정별 보상·대위 관계 분석 및 평가

1. 책임보험자와 화재보험자 동일 (가정1)

이 장의 논의를 위하여 단순한 가정을 해보자. 丙이 소유하고 있는 가액 10억 원의 건물에 甲(1층)과 乙(2층)이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층 임차인

16) 자동차보험약관상에도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지급거절조항).”라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만약 약관에 명시적으로 지급거절조항을 두고 있다면 달리 지급거절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 및 지급거절조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다43330 판결 등 다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보다 우선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甲은 보험자 A와 보상한도 5억 원의 책임보험계약을, 2층 임차인 乙은 자신의 사업장내 기계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가입금액 5억 원의 화재보험계약을 동일 보험자 A와 체결하였다. 한편, 이 건물 소유자 丙은 보험자 B와 가입금액 5억 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1층 임차인 甲의 책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가 전소되었다. 주요 가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가해자 및 피해자들의 보험가입내역 등

구 분			보험계약	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건 물 (가액 10억원)	가해자	1층 임차인(甲)	책임보험	A	보상한도액 5억원
	피해자	2층 임차인(乙)	화재보험		기계 가입금액 5억원
		소유자 (丙)	화재보험	B	건물 가입금액 5억원

이 가정 하에서 보상관계를 생각해 보자. 우선, 소유자 丙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 B로부터 보험금 5억 원을 지급받으므로 잔존 손해액은 5억 원이다. 여기에서 소유자 丙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사고 가해자인 1층 임차인 甲에게 손해배상(5억 원)을 구하거나, 甲의 책임보험자인 보험자 A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손해배상(5억 원)을 구할 수 있다. 만약, 보험자 A가 소유자 丙의 청구에 응하여 잔존손해액 5억 원을 지급하면 소유자 丙은 전체 손해를 회복한다. 이 경우, 소유자 丙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했던 보험자 B가 가해자인 1층 임차인 甲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여 5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층 임차인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 A도 가해자인 甲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여 5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 가해자인 甲이 전체 손해액 15억 원을 부담하는 것이 손해배상책임법리에 부합한 것인데, 5억 원의 책임보험 가입을 통하여 위험을 전가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사고책임자 甲은 자신의 재산에서 10억 원의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보험자 대위법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하나의 보험자(A)가 가해자(甲)의 책임 보험자와 피해자(乙)의 재물보험자의 지위를 함께 갖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관계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복수지위보험자 A가 사고피해자인 2층 임차인 乙에게 화재보험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소유자 丙의 직접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논리를 생각해 보자. 보험자 A는 재물보험자의 지위에서 임차인 乙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乙이 가해자 甲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며 이에 기하여 보험자 A는 甲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보험자 A는 乙이 甲의 책임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도 대위할 수 있다. 이러한 대위권에 근거하여 보험자 A는 민법상의 상계¹⁷⁾ 또는 혼동법리¹⁸⁾에 따라 소유자 丙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구성을 시도할 수 있다.

1) 상계주장의 타당성 : 피보험자(乙)의 가해자(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대위

상계주장의 논거는 보험자 A가 재물보험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피보험자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乙이 甲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5억 원)을 대위하는 한편, 보험자 A는 甲의 책임보험자 지위에서 甲에게 지급할 보험금 지급채무(5억 원)도 부담하므로 동일인 甲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상계되어 보험자 A와 甲 사이의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甲의 책임보험계약에 근거하는 피해자인 丙의 보험금 직접청구에 응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상계주장은 피해자 丙이 존재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피해자 丙이 없다면, 재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보험자 A가 피보험자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해자 甲에게 행사하게 될 것이고 甲은 책임보험자 A의 피보험자이므로 보험금 청구권을 보험자 A에게 역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채무가 상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엄밀한 측면에서는 이를 상계의 효과라고 보기는 힘들다. 보험자가 책임보험자

17)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1항에서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에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채권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하여 상계권자의 상계권 행사를 통해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18) 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및 효과)에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간소화하려는 그 목적이 있다.(장재현, 온주 민법, 온주 편집위원회, 2023.7.1.)

및 재물보험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경우, 최종적인 책임은 책임보험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위에서 보듯이 개념적으로 두 개의 보험계약관계상의 보험자대위 및 보험금 청구과정을 모두 거치면 책임보험자 A의 피보험자인 甲이 자신의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결국, 보험자 A는 재물보험계약단체계정에 보험금 지급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보험계약단체계에 보험금 지급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 乙이 보험자 A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피해자 乙은 자신의 화재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가해자 甲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기하여 보험자 A에게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결국, 피해자 乙이 보험자 A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든지 간에 보험자 A의 내부적으로는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최종적인 경제적 부담을 진다는 결론은 동일하다.¹⁹⁾

그러나 별도의 피해자 丙이 있는 경우에는 丙이 행사하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丙의 직접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 책임보험관계에서는 丙의 직접청구권이 甲의 보험금 청구권 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상법 제724조 제1항에서 “제3자(丙)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甲)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자 A는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丙의 직접청구권에 우선적으로 응하여 한다. 보험자 A는 피해자 丙이 甲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甲의 보험금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보험자 A는 별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 甲의 보험금청구권을 상계함으로써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 丙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해석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권리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규정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취지에 부합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 乙이 보험자 A에게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보

19) 책임보험자와 재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고 상이한 경우, 최종적인 책임을 책임보험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명확하다. 재물보험자가 우선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후 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책임보험자에게 대위구상을 하면 지급보험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으므로 모든 최종적 부담은 책임보험자가 지게 된다.

험자 A의 상계주장은 불가능하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성격은 피보험자(甲)의 보험자(A)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乙)가 보험자(A)에게 가지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자 학계의 통설적 견해이므로 동일인(甲)에 대한 채권·채무가 상계적상에 놓여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피해자(丙)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자 A는 피해자 丙과 피해자 乙의 직접청구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보험자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다만, 보험자 A가 피보험자인 피해자 乙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였다고 볼 경우에는 민법상의 '혼동법리'를 통하여 항변을 시도할 수는 있다. 이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2) 혼동주장의 타당성 : 피해자(乙)의 직접청구권 대위

피보험자인 피해자 乙에게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복수지위보험자 A는 사고가해자인 甲의 책임보험자 A에게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 乙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한편, 甲과의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 乙의 직접청구권에 응하여야 할 채무도 책임보험자 A에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보험자 A에게 직접청구권의 채권과 채무가 모두 귀속되어 혼동으로 소멸할 수 있다는 논거이다.

그러나 이 역시 앞의 상계주장에서 보았듯이, 다른 피해자(丙)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직접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재물보험자와 책임보험자의 지위를 겸한 복수지위보험자 A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계정을 책임보험계약에 근거한 책임계약단체계정에서 부담하게 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甲과 체결한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甲과 체결한 책임보험계약상의 총 보상한도에서 지급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이고, 만약 보험금 지급으로 보상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책임보험계약은 소멸한다.

하지만, 별도의 피해자(丙)의 직접청구권이 존재한다면 앞의 상계주장에 대한 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자의 혼동주장은 상법상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직접청구권의 법적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인정될 수 없다. 혼동논거를 용인하는 것은 특정보험자가 가해자(甲)의 책임보험자와 피해자(乙)의 재

물보험자의 지위를 함께 겸하는 우연한 사정으로 재물보험자가 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가장 우선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자신의 보험관계 밖에 있는 피해자(丙)의 보호를 외면하고 배제하는 것이어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취지와 배치된다.

또한, 보험자 A가 乙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로 취득한 乙의 피해자 직접청구권(5억 원)과 피해자 丙이 책임보험자 A에게 행사하는 피해자 직접청구권(5억 원) 중 전자의 권리가 후자의 권리보다 앞선다고 볼 수도 없다. 모두 직접청구권 행사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최소한 같은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겠지만²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직접청구권의 법적취지를 감안하면, 보험자가 대위로 취득한 2차적인 직접청구권 보다는 피해자(丙)의 제1차적인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¹⁾

3) 보상관계 평가 및 정리

복수지위보험자 A는 별도의 피해자가 존재하여 직접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상계 또는 혼동의 논거로 별도의 피해자 丙의 직접청구권을 배척할 수 없다. 보험자 A는 甲과 체결한 책임보험계약에 근거하여 丙의 청구에 응하여 보험금 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어 책임계약은 소멸한다. 피해자 丙은 보험자 A와 별도의 보험자 B로부터 각각 5억 원을 보상받아 전체 손해 10억 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자 A와 보험자 B는 각각 乙과 丙의 재물보험자 지위에서 보험금 5억 원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에 따라 甲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고가해자 甲은 총 10억 원의 구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보상관계가 현재 상법의 직접청구권의 취지와 보험자 대위법리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20) 같은 지위로 간주한다면, 보험자 A는 비례분담방식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도액 5억 원에 대하여 대위권을 취득한 보험자 A 자신과 피해자 丙에게 각각 2.5억 원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21) 丙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 대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보험자 A는 丙에게 책임보험계약에 근거하여 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책임보험자와 화재보험자 상이 (가정 2)

앞의 가정과 달리, 배상책임보험자와 화재보험자가 상이한 경우, 즉 복수지위 보험자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보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모든 가정은 동일하고 2층 임차인 乙이 보험자 B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만 차이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가해자 및 피해자들의 보험가입내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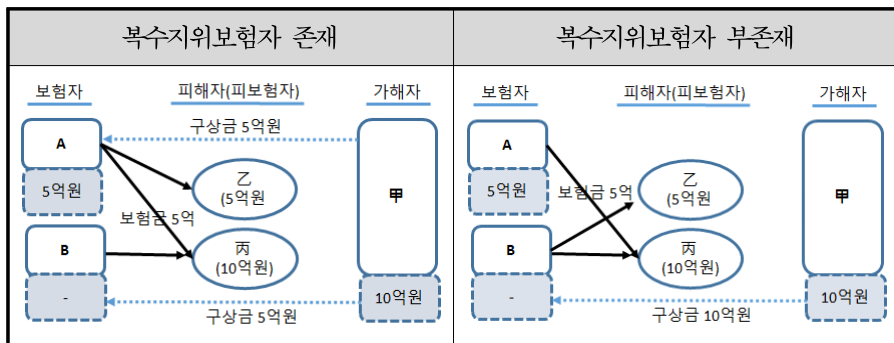
구 분			보험계약	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건 물 (가액 10억원)	가해자	1층 임차인(甲)	책임보험	A	보상한도액 5억원
	피해자	2층 임차인(乙)	화재보험	B	기계 가입금액 5억원
		소유자 丙	화재보험		건물 가입금액 5억원

건물 소유자 丙은 보험자 B에게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잔존하는 손해액 5억 원에 대하여 가해자 甲의 책임보험자인 A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 여기서 보험자 A가 보험금 5억 원을 소유자 丙에게 지급하면 소유자 丙은 손해발생 전액을 보전받는다. 한편, 보험자 B는 피보험자 乙에게도 5억 원의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모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 B는 가해자 甲에게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총10억 원을 구상할 수 있다.²²⁾

화재보험자와 책임보험자가 동일하다는 우연한 사정, 즉 복수지위보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관계상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이해진다면 이는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앞의 가정(1)과 이번 가정(2)에 따른 보험금 지급, 구상관계를 고려하여 각 이해관계자별 경제적 부담을 아래에서 분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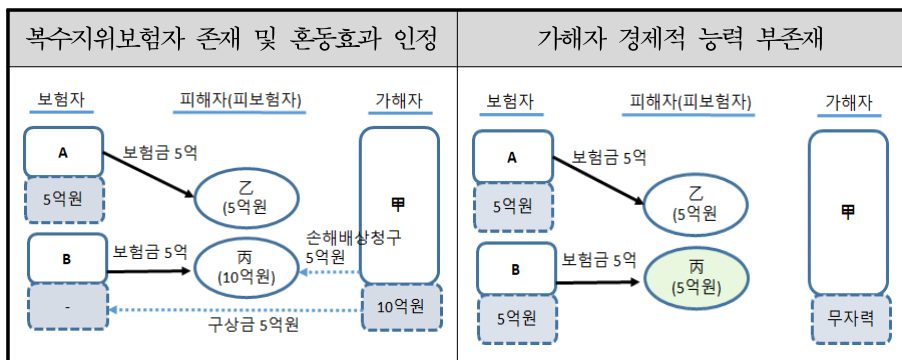
22) 주택 소유자 丙의 화재보험자 지위에 있는 보험자 B는 피보험자 丙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丙의 손실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丙의 지위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丙이 甲의 책임보험자로부터 잔여손실 5억 원을 받아 손실을 전액 회복하였으므로 보험자 B는 乙과 丙의 권리를 모두 대위하여 가해자 甲에게 대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복수지위보험자 존재(가정1) 또는 부존재(가정2)의 경우의 경제적 부담



위 그림에서 보험자와 가해자 측의 음영이 있는 점선박스 안의 금액이 보상 및 구상관계를 종결하였을 경우 각 이해관계자들의 최종 경제적 부담액이다. 실선화살표는 보험자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의 흐름이고 점선화살표는 가해자로부터 회수되는 구상금의 흐름이다. 최종적으로 보험자인 A가 5억 원을 부담하며, 화재보험자인 B는 가해자로부터 대위구상금을 회수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은 없다. 가해자 甲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액 총15억 원 중 책임보험자인 A가 5억 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자신의 고유자산에서 1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서 피해자인 乙과 丙은 가해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보험자 A 또는 B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전체 손해가 회복된다.

2) 가정1)에서 혼동효과를 인정할 경우 및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부존재 경우



복수지위보험자 A의 혼동효과를 인정한다고 가정을 하면, 피해자 丙은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험자들로부터 수취하는 보험금으로는 그 손해를 완전하게 회복할 수 없다. 가해자 甲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5억 원을 추가로 보상받아야만 손해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른쪽 표가 보여주듯이 가해자 甲에게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는 피해자 丙의 손해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평가

가정(1)과 가정(2)에서 각 보험자, 가해자, 피해자의 최종적인 경제적 부담은 동일하게 발생하고, 보험자 입장에서 최종적인 부담은 책임보험자(A)의 지위에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각 가정에서 모두 피해자 乙과 丙의 손해는 보험자의 보험금으로 모두 회복되며, 사고를 일으킨 甲이 무자력일 경우에만 보험자가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정(1)에서 혼동논거를 용인하면 이와 같은 동일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丙)가 직접 가해자(甲)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손실을 회복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흠결이 발생한다. 책임보험자 A가 5억 원을 부담하고 화재보험자 B는 사고가해자 甲에서 대위구상을 통하여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 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가정(1) 및 가정(2)의 결론과 동일하지만, 피해자 丙의 손해는 보험관계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는 전체 손해(10억 원)의 50%만 회복된다. 전체 손해를 보전받으려면, 피해자 丙이 가해자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여 5억 원을 배상받아야만 한다. 이는 가해자 甲이 무자력인 경우에는 피해자 丙이 그 손해를 그대로 감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수지위보험자가 존재하면, 혼동의 논리가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책임보험자와 화재보험자 동일. 다만 건물가액 10 → 5억 원으로 하향 (가정 3)

이번에는 가정(1)과 같이 복수지위보험자가 존재하고 건물가액이 10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가해자 및 피해자들의 보험가입내역 등

구 분			보험계약	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건 물 (가액 5억원)	가해자	1층 임차인(甲)	책임보험	A	보상한도액 5억원
	피해자	2층 임차인(乙)	화재보험		기계 가입금액 5억원
		소유자 丙	화재보험	B	건물 가입금액 5억원

이 경우, 주택 소유자 丙은 가입한 화재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 B로부터 전체 손해를 보상받기 때문에 가해자 甲의 책임보험자인 보험자 A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그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유자 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 B는 피보험자 丙이 가해자 甲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그의 책임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책임보험자인 보험자 A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상관계에서는 보험자 A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고 직접청구권을 대위로 취득한 보험자(A 및 B)만 있을 뿐이다. 앞의 가정(1)은 피해자 丙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인 보험자 A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이고, 이번 가정(3)은 피해자 丙의 화재보험자인 보험자 B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인 보험자 A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즉, 전자는 피해자와 책임보험자 간의 쟁점이고 후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자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 간의 쟁점이다.

복수지위보험자 A가 피해자로부터 직접청구권 행사를 받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보험자 A가 화재보험자의 지위에서 피해자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취득한 직접청구권(채권)과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피해자 乙의 직접청구권에 응하여야 할 의무(채무)도 동일인(A)에게 귀속되어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해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다른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가 없는 만큼, 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도액(5억 원)을 상한으로 하여 화재보험자의 지위에서 대위취득한 금액 전액(5억 원)에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혼동의

법률효과로 책임보험자 A의 보상한도가 모두 소진되었으므로 보험자 B의 대위구상청구를 보험자 A가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 B는 대위로 취득한 丙의 손해배상청구권(5억 원)을 가해자 甲에게 행사하여 구상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가능한 해석은, 보험자 A 및 보험자 B는 모두 화재보험자 지위에서 각각 피해자 乙과 丙의 직접청구권(각각 5억 원)을 대위한 것이고 두 청구권 간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자 A가 혼동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도액(5억 원)을 한도로 하여 보험자 A가 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 금액비율 만큼 비례적으로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보험자 A는 2.5억 원의 혼동의 법률효과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 B의 대위구상청구에 대하여 2.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후, 보험자 A와 B는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가해자 甲에게 각각 2.5억 원의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

위 해석 중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두 번째 해석이 합리적이고 공평의 원리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보험자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므로 보험자 A의 지위를 내부적·논리적으로 책임보험자 지위(A')와 화재보험자 지위(A'')로 구분하면, 화재보험자인 A''이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책임보험자인 A'에게 대위에 기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보험자 B도 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인 A'에게 대위에 기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책임보험자 A' 입장에서는 청구권 경합이므로 화재보험자 A''와 보험자 B에게 각각 2.5억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둘째, 가정(3)의 사례에서 피해자 乙과 丙이 자신의 화재보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가해자인 甲의 책임보험자 A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책임보험자 A는 甲과의 책임보험계약에 기초한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乙과 丙의 청구권에 우열이 없으므로 각각 2.5억 원씩 비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후에 피해자 乙과 丙은 자신의 화재보험자인 보험자 A 및 보험자 B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잔여손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셋째, 책임보험자와 화재보험자의 지위를 겹하고 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화재보험자의 지위에서 대위취득한 금액 전액(5억 원)에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면, 다른 화재보험자(B)는 피보험자(丙)에게 화재보험계약에 기한 보험

금을 지급을 미루고 피해자(丙)로 하여금 책임보험자(A)에게 먼저 보상을 청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책임보험자 A로부터 일부 금액(2.5억 원)의 대위구상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복수지위보험자 A는 책임보험과 화재보험으로부터 각각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있고, 보험자 B는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만을 수취하였음에도 첫 번째 해석에 의하면 보험자 A와 보험자 B의 경제적 부담에 차이가 없다(각각 5억 원). 반면, 두 번째 해석에 의하면 보험자 A의 경제적 부담(7.5억 원)이 보험자 B(2.5억 원) 보다 높으므로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책임보험자와 화재보험자 동일, 보험미가입 별도 피해자 존재(가정 4)

다음 <표4>는 앞의 가정(3)과 비교해 보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丁이 존재하는 부분만 다르다.

<표4> 가해자 및 피해자들의 보험가입내역 등

구 분			보험계약	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건 물 (가액 5억원)	가해자	1층 임차인(甲)	책임보험	A	보상한도액 5억원
		2층 임차인(乙)	화재보험		기계 가입금액 5억원
	피해자	소유자 (丙)	화재보험	B	건물 가입금액 5억원
주변 건물		소유자 (丁)	-	-	피해액 3억원

앞서 설명한 가정별 논의내용을 위 사례에 적용하면, 보험계약 관계 밖에 있는 피해자 丁의 직접청구권(3억 원)은 복수지위보험자 A가 혼동법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배제되므로 가해자 甲의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험자 A가 책임보험에 기하여 피해자 또는 대위권을 행사하는 타보험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복수지위보험자 A는 화재보험자의 지위에서 乙의 직접청구권(5억 원)을 대위취득하였고, 보험자 B도

丙의 직접청구권(5억 원)을 대위취득하여 보험자 A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자 A가 혼동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1억 원(=2억×50%)이므로 보험자 B의 대위구상에 응하여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 A와 B는 가해자 甲에게 대위구상권을 행사하여 각각 4억 원을 구상할 수 있다.²³⁾

IV. 최근 대법원 판례 분석 및 평가

1. 피해자 對 복수지위보험자 간의 소송사건

(대법원 2023.4.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1) 사건의 개요

丙 소유 건물에 다수의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4층 임차인 甲의 피고용인이 사업장에서 용접 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丙 소유 건물 전체가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소유자 丙은 건물 및 재고자산에 관하여 약 11.6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지하층 등에서 사업을 영위 하던 소유자 丙의 배우자 乙은 기계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 약 1.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원고 丙과 乙은 자신들이 가입한 화재보험계약 및 타인이 가입한 손해보험계약을 통하여 각각 7.1억 원과 1.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들의 잔여손해액은 각각 4.6억 원과 0.2억 원이었다.

한편, 이 사건의 가해자 甲은 화재로 인한 대물배상책임의 보상한도액을 3억 원으로 한 보험계약을 보험자 A와 체결하였고 동일 보험자 A는 2층 임차인 丁과 임차부분에 설치된 기계 및 시설 등의 동산에 관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자 A는 이 화재보험계약에 기하여 임차인 丁에게 5.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보험자 A는 가해자 甲의 책임보험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 丁의 화재보험자 지위에 있는 복수지위보험자이다. 각 건물 점유자별 보험계약 사항 등은 다음의 <표5>와 같다.

23) 가해자 甲이 부담하는 총 배상책임액은 13억 원이며, 이중 5억 원은 책임보험 가입을 통하여 전가 하였으므로 잔여부담액 8억 원은 甲의 재산으로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표5> 건물 점유자별 보험가입내역 및 보험금 수취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점유자	관계 등	영위업종	보험자	보험계약	가입금액	보험금
지하	乙 (원고)	소유자의 남편	종이컵생산	B	화재보험	건물 등 15	1.1
1층	丙 (원고)	소유자 (피해자)	식품물류				7.1
2층	丁	임차인 (피해자)	안경코팅	A (피고)	화재보험	기계 9.8	5.1
3층	戊	임차인 (피해자)		C	화재보험	건물 등 0.9	-
4층	甲	임차인 (가해자)	안경도금	A (피고)	화재/책임보험	화재(건물) 1 배상책임 3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피해자인 원고 丙과 乙은 자신들이 가입한 화재보험계약 등으로 손해에 대한 보전을 받았으나 여전히 각각 4.6억 원과 0.2억 원의 손해가 잔존하므로 이를 보전받기 위하여 가해자 甲의 책임보험자인 보험자 A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의 보험자 A는 가해자 甲의 책임보험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인 丁의 화재보험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丁의 화재보험자로서 丁의 재산손해에 대하여 5.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丁이 甲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甲의 책임보험자 A에게 가지는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앞의 가정(1)과 동일하다.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 및 보험자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동일한 보험자가 책임보험자와 화재보험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잔손해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복수지위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가정(1)과 정확히 일치한다. 가정(1)에서와 동일하게 이 사건의 피고인 복수지위보험자 A는 피해자의 화재보험자의 지위에서 丁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는 근거로 상계의 주장을, 그리고 피해자 丁의 가해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근거로 혼동의 주장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乙과 丙)의 보험금청구(직접청구권 행사)를 거절하였다.

3) 대법원 판결 요지²⁴⁾

대법원은 피해자인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이나 가해자인 제3자의 부당한 면책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자대위는 제한될 수 있고, 상법상 보험자대위제도와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화재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보험자대위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험자대위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²⁵⁾

보험자 A는 피해자 丁에게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보험자대위로 丁의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인 원고(乙 및 丙)들이 잔존손해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손해 합계액(4.8억 원)이 책임보험 한도액(3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 보험사 A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보험자 A의 혼동 또는 상계의 주장은 보험자 A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丁의 보험자 A에 대한 직접청구권 또는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나, 원고들의 직접청구권 행사로 피고 보험자 A의 보험자대위로 인한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이상 혼동이나 상계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 보험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 평 가

이 판결은 상법상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취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

24) 대구지법 2016. 8. 25. 선고 2015가합206977 판결(1심), 대구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 26083 판결(항소심)에서도 피고 보험자(A)는 이 사건 피해자들인 원고들(乙, 丙)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혼동이나 피고의 상계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25)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 위함이라는 점과 보험자대위의 취지, 즉 피보험자의 이중이득 내지 가해자인 제3자의 부당한 면책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험자대위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복수지위보험자는 다른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를 받게 된 경우, 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재물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복수지위보험자의 대위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의 가정(1)에서도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개입하는 경우, 복수지위보험자는 상계 또는 혼동법리를 내세워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논거를 살펴본 바 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취지를 감안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복수지위보험자의 보험자 대위행사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판결을 통하여 확인해 주고 있다.

그 동안 재물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 재물보험자가 사고 가해자 내지 그의 책임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대위범위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차액설)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대법원 판례²⁶⁾로 통하여 확인되어져 왔으나, 이번 판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가 아닌 “피해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보험자의 대위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상법상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취지를 감안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도 보험자대위는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대법원에서 명확히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과다하게 확장하여 하나의 사고에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다수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를 탐지하여 자신의 보험자 대위행사 범위 및 제한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자신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으로 피보험자의 손해가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보험자 자신의 대위행사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겠지만,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회복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보험자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책임보험자와 재물보험자의 지위를 겸한 복수지

26)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등 :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

위보험자는 보험관계 밖에 있는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자신의 보험자 대위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2. 화재보험자 對 복수지위보험자 간의 소송사건

(대법원 2023.4.27. 선고 2021다309576 판결)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공동피고 △△화학(대표자 甲)은 폐유를 재활용하여 세척유, 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업체의 대표자 甲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보험사인 A, B들과 각 보상한도 3억 원의 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화학이 폐유를 아세톤과 알코올로 분리하는 작업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는 乙과 丙의 사업장에 손해를 입혔다. 피고 보험자 A와 B는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인 乙 및 丙과 별도의 손해보험계약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라 피고 보험자 A는 乙에게 16.5억 원을, 피고 보험자 B는 丙에게 3.1억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다른 피해자 丁은 원고인 보험자 C와 화재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의 보험자 C는 보험금으로 丁에게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가해자 및 피해자별 보험계약 사항 등은 다음의 <표6>과 같다.

참고로,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화재 당시 그 주변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량 접근이 곤란하였던 점, 주변 건물이 대부분 노후화되고 다량의 가연물이 존재로 급격한 연소확대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고책임이 있는 △△화학의 배상책임은 손해의 70%로 제한된다고 보았고, 이 책임제한 부분은 대법원 판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표6> 가해자 및 피해자별 보험가입 사항 및 보험금 지급액

구 분		보험종목	보험자	원/피고	보험금 지급액 등
가해자	△△화학 (공동피고 甲)	책임보험	A	피고	보상한도액 3억원
			B		보상한도액 3억원
피해자	인근 피해업체(乙)	화재보험	A		보험금 16.5억원
	인근 피해업체(丙)		B		보험금 3.1억원
	인근 피해업체(丁)		C	원고	보험금 1.35억원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자 A 및 B는 가해자(甲)의 책임보험자와 피해자(乙 및 丙)의 화재보험자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는 복수지위보험자들이다. 화재보험자의 지위에서 피해자(乙 및 丙)에게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였고, 이들이 지급한 보험금은 각각의 배상책임보험계약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상태였다. 한편, 이 사건의 원고 보험자 C는 이 사건 다른 피해자(丁)의 화재보험자로서 자신의 피보험자(丁)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丁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대위로 취득하였다. 보험자 C는 이 대위권에 기하여 가해자 甲의 책임보험자인 피고 보험자 A 및 B에게 대위구상(1.35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자 A 및 B는 이미 乙 및 丙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여 그들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채권 취득)함과 동시에 책임보험자로서 乙 및 丙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채무 부담)도 있어 혼동으로 보험자 C의 대위구상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응 앞의 가정(3)과 동일하다. 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대위구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험자 간의 다툼이다.

3)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요지

가. 하급심 판결

하급심(제1심 및 2심²⁷⁾)에서는 앞의 대법원 판결례의 태도와 동일하게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취지를 고려하여 복수지위보험자(A 및 B)의 상계 또는 혼동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수지위보험자 A와 B는 연대하여 원고 보험자 C에게 1.35억의 70%인 0.9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즉, 원고 보험자 C가 대위취득한 丁의 피해자 직접청구권도 다른 피해자가 가해자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행사하는 직접청구권과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달리 양자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나. 대법원 판결

이 사건 대법원은 앞의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취지에 따라 보험자의 대위권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행사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피해자가 없다면 그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자 대위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보험자가 대위의 효과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의 경우도 사고의 피해자가 행사하는 직접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 행사 및 민법상의 혼동 등에 관한 법리를 잘 못 적용한 것이라 하면서 이 사건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시켰다.

“피고들이(보험자 A 및 B) 일부 피해자들(乙 및 丙)과 체결한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피해자(丁 또는 제3의 피해자)들이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책임보험 한도액(각 3억 원)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손해 합계액상당을 뺀 차액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가 없다면 그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의

27) 인천지방법원 2020. 8.18. 선고 2019가단23757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나 74286 판결.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피고들은 피고들이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 행사로 책임보험금을 제한 없이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피해자들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피고들의 보험자대위로 인한 권리행사가 제한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들의 손해액과 원고 및 피고들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심리하여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4) 평 가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화재보험자가 대위로 취득한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을 동일시하여 복수지위보험자는 대위권을 행사하는 화재보험자의 구상청구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이내로 응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복수지위보험자가 다른 피해자로부터 직접청구권 행사를 받았는지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는 화재보험자의 대위구상의 허용범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이 사건 원심은 앞에서 다른 대법원 판결사건(책임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직접 받은 경우)과 이번 대법원 판결사건(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대위한 화재보험자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은 경우)을 동일하게 보았지만, 대법원을 이를 배척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별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아마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정이 있어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의 가정(1)과 같이 피해자의 화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손해회복을 완전히 받지 못하여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4)와 같이 피해자가 어떠한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여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의 복수지위보험자인 A 내지 B는 자신들의 보상한도액 이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각각의 보상한도액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범위내에서 보험자대위를 행사하는 화재보험자의 대위구상청구에 응하면 된다는 것이다.²⁸⁾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피해자 직접청구권 간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준 의미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복수지위보험자에게 행사된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가 있는지를 살펴서 이 사건 원고인 화재보험자의 대위구상청구 인정범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직접청구가 없다는 가정 하에 원고인 화재보험자의 대위청구가 어떤 범위로 제약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²⁹⁾ 이는 앞의 가정(3)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책임보험자가 화재보험자의 지위에서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혼동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보험자들간의 대위권 경합으로 보아서 각각 지급한 보험금 비례방식으로 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도액을 배분하고, 복수지위보험자에게 배분된 금액에 한정하여 혼동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첫 번째 해석을 적용해 보면, 책임보험자 A는 화재보험자 지위에서 16.5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보상한도액 3억 원 초과하고 있어 혼동법리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험자 C의 대위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책임보험자 B는 피보험자 丙에게 3.1억 원을 지급하였지만 가해자 책임은 70%로 제한된다고 해석한 원심의 해석이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보면, 보상한도액 3억 원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2.17억 원이고 책임보험자 B의 잔여보상한도는 0.83억 원이다. 그러므로 보험자 B는 보험자 C의 대위청구(0.93억 원=1.35억 원×70%)에 대하여 0.8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두 번째 해석을 적용해 보면, 각 보험자 A, B 및 C의 총 대위가능금액의 합 계약에서 차지하는 각자의 대위금액 비율은 각각 79%, 15%, 6%이다. 이 비율을 책임보험자 A, B의 보상한도액에 적용한 금액이 각각의 보험자의 몫으로 할당된다. 책임보험자 A는 자신인 인수한 책임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2.36억 원, 보험자

28) 이 사건의 피해자들인 乙, 丙, 丁에게 잔여손해액이 남아있거나 이들 외의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하여 책임보험자인 A 내지 B에게 보상한도액(각 3억 원)을 초과하는 직접청구가 있었다면 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어 이 사건 원고인 보험자 C의 대위구상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이다.

29) 책임보험자 입장에서 보면, 화재보험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B에게 0.44억 원, 보험자 C에게 0.19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책임 보험자 B는 보험자 A에게 2.36억 원, 자신에게 0.44억 원, 보험자 C에게 0.19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보험자 C의 대위구상 청구에 책임보험자 A와 B는 각각 0.19억 원(합계 0.39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책임보험자 A의 혼동효과는 2.36억 원이며, 책임보험자 B의 혼동효과는 0.44억 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보험자 간에 대위청구권의 경합이라고 보고 복수지위보험자의 보상 책임액을 공평하게 안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첫 번째 방법에 비하여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³⁰⁾

참고로, 위의 가정과 달리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직접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금액을 먼저 복수지위보험자들의 책임계약의 보상한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그 보상한도 잔여액을 기준으로 위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V. 결 론

보험자대위제도는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이나 가해자의 부당한 면책을 방지하는 것인데, 이러한 우려가 없다면 보험의 효용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험자대위는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이 판결을 통하여 ‘보험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손해회복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대위범위 확정시 보험자의 권리보다 피보험자의 권리를 우선시 하여야 한다고 밝힌 차액설³¹⁾ 역시 보험의 효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자대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이다.

경제주체들이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전가 내지 관리하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보편화되면서 보험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와 피해자의 재물보험자의 지위를 갖

30) 대법원 판결문 자체만으로는 어느 방식을 적용하여 혼동의 범위를 정할 것인지는 불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읽히는 측면도 있지만, 두 번째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1)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

는 복수지위보험자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보험자가 혼동법리를 통하여 보험자대위를 우선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상법상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개입된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효용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면 복수지위보험자의 대위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복수지위보험자는 자신이 재물보험자의 지위로서 취득한 대위권을 기초로 삼은 혼동항변을 배척하고 책임보험계약에 기한 보상한도액 이내로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응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책임보험자에게 별도로 행사된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른 재물보험자가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책임보험자에게 행사하는 경우라면, 복수지위보험자는 혼동법리에 기초하여 재물보험자에게 항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보험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공평과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게 정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혼동법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경우는 각각의 재물보험자의 대위청구권이 경합하는 것이므로 각 재물보험자가 취득한 보험대위 금액에 비례하여 책임보험계약상의 보상한도액을 안분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복수지위보험자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는 범위는 보상한도액 중 자신에게 안분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기존 ‘피보험자’ 관점에서 보험효용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 관점에서도 책임보험의 효용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법상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복수지위보험자의 대위권은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해서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잘 짚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I. 단행본

-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년
박세민, 『보험법(제6판)』, 박영사, 2021년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지원, 2005년
장덕조, 『보험법(제5판)』, 법문사, 2020년
장재현, 『온주 민법』, 온주 편집위원회, 2023년
한기정, 『보험법(제3판)』, 박영사, 2021년
한창희, 『보험법(제4판)』,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9년

II. 논 문

- 이준교, “보험자대위의 법률관계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2022년
장덕조·남하균,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과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 금융법연구 제15권 제1호, 2018년
Ronald H. Horn, “*Subrogation in Insurance Theory and Practice*”, S.S. Huebner Foundation, 1964년

<Abstract>

Scope and Limitations in Insurer Subrogation by Double-Hatted Insurer's Merger Defense in Civil Law

Lee, Jun Kyo^{*}

As the culture of risk transfer and management through insurance spreads and becomes universal among individual economic agents, the emergence of the double-hatted insurer (hereafter, "DI"), who assumes the position of both the tortfeasor's liability insurer and the victim's property insurer, is increasingly observed. This trend gives rise to new issues concerning the DI's subrogation after indemnifying the insured as of property insurer. For instance, it is not easy to clearly interpret whether the DI can defend against the victim's direct claim based on the legal principles of subrogation or merger in civil law, or to what extent the DI can avoid the responsibilities they should bear as a liability insurer based on its subrogation right.

In this paper, an attempt has been made to analyze and seek solutions to the above issues related to the insurer's subrogation under simple assumptions in order to facilitate a straightforward understanding of the controversies associated with insurer subrogation and victim's direct claim. Furthermore, through an analysis of two recent Supreme Court cases involving the same issues, if interpreting that the liability insurer can prioritize the application of subrogation through the principle of merger,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stantive function of the victim's direct claim, which was legislatively enacted in the Commercial Act to better protect the victim, cannot be properly exercised and that the DI's subrogation rights can be limited to ensure the adequacy of liability insurance coverage when the victim's direct claim is involved.

Especially,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is significant in that it not only aims to maximize insurance benefits from the perspective of

^{*} Director General,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insured,' but also strives to ensure the maximum utility of liability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victim's direct claim in the Commercial Act, it is noteworthy that the subrogation rights of the DI should also step back to some extent to facilitate the victim's damage recovery.

Key Words : Insurer's Subrogation, Victim's Direct Claim, Double-hatted Insurer, Set-off and Merger in Civil Law

